

“똑똑 두드려서 꼼꼼하게 두루살펴, 끝까지”

국가유공자를위한

행복한심김  
보훈공단

# 나라사랑행복한 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 업무매뉴얼

### 이렇게 활용하세요!

1. 본 매뉴얼은 장애·노환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의 구조나 생활 편의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해주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매뉴얼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에서부터 사업추진·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전 과정에서 현장 실무 담당자의 민원인 응대, 사업신청 등에 대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3.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업무별 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거환경개선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대리 : 033-749-3757 / 033-749-3758)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복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 목차

Part / **01** 사업개요 ..... 1

- 사업 목적
- 사업실적 및 현황

Part / **02** 사업 진행절차 ..... 4

- 사업 진행 프로세스

Part / **03** 사업대상 ..... 6

- 사업대상자 및 지원범위

Part / **04** 신청서 작성 방법 ..... 8

- 필수 기본서류
- 신청서 작성 방법 가이드

Part / **05** 자주 묻는 질문 ..... 19



# 01

## 사업개요



# 01 사업개요

## \_사업목적



- '나라사랑'은 태극기 표현(애국심 고취)
- '새싹'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
- '국가유공자'는 서비스대상자 식별 용이
- '행복한 집'은 공단을 상징

1. 장애·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구조나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 든든한 보훈을 실현코자 함

2. '시설복지' 중심에서 '재가복지'로의 복지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장애·고령 국가유공자의 신체 및 장애 상태에 맞추어 주거환경을 개선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01 사업개요

## \_사업실적 및 현황



### 📢 사업실적

2009년 사업 개시 이후, 공단 자체 예산 및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총 6,518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 하였음

구분	'09~'20	'21	'22	계
가구수	5,317	572	629	6,518
금액(백만원)	27,656	3,650	3,800	35,106

### 📢 협업사항

공단은 설계, 전기, 에너지 효율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협업기관	협업내용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노후 설비 교체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등	장애 환경 맞춤형 주거개선을 위한 기술 자문
한국에너지재단	단열공사 등 에너지 효율개선 시공 지원
코레일테크	대전·충청 지역 전기시설 안전점검, LED 교체 지원



# 02

## 사업진행절차



# 02

## 사업진행절차

### \_사업 진행 프로세스



### 사업절차





# 03 — 사업대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복한성림  
보훈공단

## 나라사랑행복한 집

## 03 사업대상 \_사업대상자 및 지원 범위



### 🔊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구분	나라사랑 행복한집	
	생활편의시설개선	주택구조개선
지원대상	독립·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독립·국가유공자 본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면설치 등	생활편의시설 및 가옥구조 개선

### 🔊 사업 지원 내역(예시)

생활편의시설 개선		주택구조개선	
전(외부 재래식 화장실)	후(실내 신축 공사)	전	후
전(외부 재래식 화장실)	후(실내 신축 공사)	전	후



## 04

## 신청서 작성 방법



## 04 신청서 작성방법



원활한 사업 진행과 사업관련 수혜자의 민원 최소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작성 전 필수 안내 사항입니다.

### 1. 중복지원 불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규정 시행세칙 7조 (중복 지원 금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수혜한 경우, 국가보훈처중앙이자 주택 편의시설 지원 사업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가 건설협회 등의 후원을 받아 시행한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입니다.

### 2. 사업신청 후 사업지원에 대한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서 접수 이후 공단 실사자들이 해당 사업 신청가구를 방문, 현장실태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가구에 대한 사업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심의 탈락 가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의 탈락가구의 경우 다음회차 사업에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04 신청서 작성방법



### 3. 지원범위는 신청내역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서 접수 이후 서비스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및 공단 실사자들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위원회에 상정될 공사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이 신청하신 공사내역과 공단의 최종 지원범위가 상이해 질 수 있습니다.

### 4. 위원회 심의 완료 이후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가구, 가구별 공사금액 및 공사범위와 확정됩니다. 이에 위원회 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설계오류 등)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이중창 교체로 지원범위가 확정 된 가구가 공사과정에서 문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이중창 설치가 불가한 경우 단창으로 설계변경 가능합니다.

## 04 신청서 작성방법



### 5. '사업신청 취소' 는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이후 부득이한 사유(임대인의 주택매매, 장기입원 등)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취소 신청 하실 경우, 향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회차 사업을 재신청 하실 경우 반드시 보훈(지)청 및 보훈병원에 사업접수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단은 사업신청 취소자에 대한 다음회차 자동 재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04 신청서 작성방법

## \_상황별 제출 서류



### 필수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공사를 희망하는 주택 주소가 표시 된 주민등록등본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동의서 하단 사업 대상자의 성명과 서명필요  
(전상군경 A씨의 아들이 사업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도 성명 및 서명은 A씨 이름으로 기재되어야 함)

### 주택소유 형태별 제출 서류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임대 계약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세 완납 증명	토지 소유주 동의서
자가 (본인소유)	●	●				
자가 (동거가족 소유)	●	●				
자가 (미동거가족 소유)	●	●		●		
전월세/임대	●	●	●			
무허가 건축물 (토지본인소유)	●				●	
무허가건축물 (토지타인소유)	●				●	●

# 04 신청서 작성방법

## \_신청서 작성 가이드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sup>4</sup>	성 명	1	대 상 구 분	2
	보 훈 번 호	3	장기요양등급	4
	생 년 월 일	5	연 령	만 세
	급 여 자 격 (택 1)	<input type="checkbox"/> 중위소득 30%이하(기초생계급여, 생활조정수당) <input type="checkbox"/> 중위소득 43%이하(기초의료·주거급여, 생활조정수당) <input type="checkbox"/> 중위소득 50%이하(기초교육급여, 생활조정수당,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중위소득 100%이하(의료급여, 재가복지)		
	주 소	6		
	전 화 번 호	7	집 :	휴대폰 :
주택 소유	자 가 <input type="checkbox"/>	전·월세 <input type="checkbox"/>	임대아파트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주택 형태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아 파 트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희 망 서 비 스	장애시설물	10		
	일반시설물	11		
건강 상태 (선택항목)	12	13		
위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생활편의시설 개선, 주택구조 개선)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14 ○ 신청자 : (인)				
15 ○ 추천자 : (인)				
(긴급연락 전화 : )				
16 ○ 추천기관명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 운영위원회의 지원범위 확정 이후, 변경 및 추가공사는 불가하며 거부 시 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원위소(재신청 가능)될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첨부 필요시, 긴급도 자료 또는 자기소개서, 추천사유서 등 별도 첨부 가능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04 신청서 작성방법

## \_신청서 작성 가이드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1	대상구분	2
	보훈번호	3	장기요양등급	4
	생년월일	5	연령	만세
	급여자격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위소득 30%이하(기초생계급여, 생활조정수당) <input type="checkbox"/></li> <li>• 중위소득 43%이하(기초의료·주거급여, 생활조정수당) <input type="checkbox"/></li> <li>• 중위소득 50%이하(기초교육급여, 생활조정수당, 차상위) <input type="checkbox"/></li> <li>• 중위소득 100%이하(의료급여, 재가복지) <input type="checkbox"/></li> </ul>		
	주소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인적사항	1. 성명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성명 기재 - 참전 유공자A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성명'란은 A씨의 이름으로 기재
	2. 대상구분	대상자분의 보훈자격을 상세등급까지 기재 - 전상군경5급, 공상군경2급, 고엽제 고도 등 참전유공자로 별도의 상이등급이 없는 경우 참전유공자(6.25) / 참전유공자(월남)으로 기재 보훈자격을 여러개 갖고 있는 경우 배점이 가장 높은 등급만 기재 (등급별 배점표 별첨 22p.)
	3. 보훈번호	대상구분에 기재한 보훈자격에 해당하는 보훈번호 기재
	4.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인한 급여자격, 등급 기재 - 미기재시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급여자격 해당없음 처리 (급여자격별, 장기요양등급별 배점표 별첨 22p)
	5.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재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상이할 때 실제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04 신청서 작성방법

## \_신청서 작성 가이드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대상구분	
	보훈번호		장기요양등급	
	생년월일		연령	만세
	급여자격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위소득 30%이하(기초생계급여, 생활조정수당) <input type="checkbox"/></li> <li>• 중위소득 43%이하(기초의료·주거급여, 생활조정수당) <input type="checkbox"/></li> <li>• 중위소득 50%이하(기초교육급여, 생활조정수당, 차상위) <input type="checkbox"/></li> <li>• 중위소득 100%이하(의료급여, 재가복지) <input type="checkbox"/></li> </ul>		
	주소	6		
	전화번호	7집 :	휴대폰 :	

인적사항	6. 주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이자 사업 대상 주택의 주소 기재 - 대상자의 주민등록이 자녀 집 등으로 전입신고 된 상태라면 사업대상지 주택으로 전입 후 사업신청 - 주소는 신주소로 작성하며, 주소 전체 기재 예)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40 3동 301호(o) 혁신로 40 3동 301호(x)
	7. 전화번호	대상자 전화번호 및 배우자, 자녀 등 보호자 연락처 기재 - 특히 독거인 경우 보호자 연락처 기재 필수이며, 섬김이가 방문하는 가정인 경우 섬김이 전화번호 추가 기재

# 04 신청서 작성방법

## \_신청서 작성 가이드



8	주택 소유	자 가 <input type="checkbox"/>	전·월세 <input type="checkbox"/>	임대아파트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9	주택 형태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아 파 트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희망 서비스	장애시설물	10			
	일반시설물	11			
건강 상태 (선택항목)	12				

대상 주택	8.주택소유	1. 자가 : 본인 및 가족소유 : 가족소유인 경우 자가 표시 체크 후, 신청자와의 관계 기재 : 예) 자가(자녀) / 자가(배우자) 등 2. 기타 : 자가/전·월세/임대아파트 외 모든 형태 : 예)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9.주택형태	1. 단독주택 : 기본주택 2. 연립주택 : 5층이하, 공동 현관이 있고 한 건물에 여러 가구 입주 : 건물 내 세대 분리 되는 경우 예)연립빌라 3. 기 타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제외 한 모든 유형 : 예) 상가건물, 빌딩, 오피스텔 등
희망 서비스	10.장애시설물	신체장애로 인해 공사 진행하고 싶은 내역 기재 - 휠체어 경사로,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발판, 단차제거 등
	11.일반시설물	가장 시급히 공사를 원하는 내역 기재 - 가구당 지원 한도 문제로 신청자가 원하는 모든 공사 진행 불가함으로 가장 시급하고, 원하는 공사 2가지 기재 - 기재한 2가지 외에도 공단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추가 가능
건강 상태	12. 건강상태	대상자의 기본적인 건강상태 기입 - 휠체어 사용, 고혈압, 당뇨, 와상으로 거동불가 - 파킨슨으로 좌측편마비, 치매 등 *치매 및 와상은 필히 기재 바랍니다. 실시시 매우 중요

# 04 신청서 작성방법

## \_신청서 작성 가이드



13 위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생활편의시설 개선, 주택구조 개선)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14 ○ 신청자 : (인)

15 ○ 추천자 : (인)  
(긴급연락 전화 : )

16 ○ 추천기관명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대상 사업	13. 대상사업	생활편의시설 개선으로 기재 - 실시 후 생활편의시설 개선 가구 중 조건에 맞는 가구 주택구조 개선으로 전환
그외	14. 신청자	사업 대상자 성함 기재 및 서명 혹은 도장 날인 - 신청자 성함 및 서명은 신청서 1번 성명과 일치해야함
	15. 추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은 현장실무자 기재 - 긴급연락전화는 추천자 사무실 전화번호 기재 - 신청 서류보완 등 긴급연락 필요한 경우 대비
	16. 추천기관명	00보훈(지)청 / 00보훈병원 등 추천기관명 기재 - (인)란에 직인 날인 필수

# 04 신청서 작성방법

## \_신청서 작성 가이드



🔊 대상자 선정 배점기준(국가유공자등주거환경개선사업 규정 시행세칙)

평점 요소	배 점	배 점 기 준	
		세 부 항 목	점 수
대상 구분	35	독립유공자, 상이 1·2급	35
		상이 3·4급	30
		상이 5·6급	25
		상이 7급 기타 국가유공자 본인	20
		국가유공자 유족	10
장기요양등급	15	1·2등급(요양시설 위탁)	15
		3등급(요양보호사 방문)	10
		4·5등급(수발자 도움없이 개인활동 가능)	5
연 령	10	본인·유족 65세 이상	10
		본인·유족 65세 미만	5
급여 자격	20	중위소득 30%이하 (기초생계급여, 생활조정수당)	20
		중위소득 43%이하 (기초의료·주거급여, 생활조정수당)	15
		중위소득 50%이하 (기초교육급여, 생활조정수당, 차상위)	10
		중위소득 100%이하 (의료급여, 재가복지)	5
긴 요 도	20	시급성 높음(안전위협)	20
		시급성 보통(개선필요)	10
계	100		

※ 주택구조개선서비스 대상자 : 대상구분(공헌도), 급여자격(생활수준), 긴요도 항목의 배점에 50% 가중치를 부여

※ 급여자격 세부항목 중복 시 상위배점 항목을 적용



# 05

## 자주묻는 질문



## 05 자주 묻는 질문



본 페이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Q 공사 후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먼저, 하자보수가 필요한 대상자분의 사업지원 년도를 확인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검수일로부터 일반공사의 경우 1년 이내, 지붕 및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3년 이내입니다.  
해당 보증기간을 벗어난 경우 하자보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분의 하자보증기간이 기간 내 인 경우 공단 주거환경개선과로 유선 연락 주시면, 공단 담당자가 공사업체와 연락 후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 Q 토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지원 불가능한 공사가 있나요?

- 오수관, 정화조, 수도배관 및 하수배관 등 공사과정에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공사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외부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을 실내 신축하는 경우, 정화조와 오수관 연결이 필수라 토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지원 불가능합니다.

### Q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도 토지대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파트인 경우 건축물대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05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사업 신청한 건물의 주소지가 나오게 재산세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세가 0원인 경우에도 재산세완납증명원은 발급 가능합니다.

### Q 토지 혹은 건축물 소유주가 가족일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소유가족이 신청자와 동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소유주가 동거인으로 어르신인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없습니다.  
반면, 소유가족이 어르신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위한  **나라사랑 행복한 집**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였음에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